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8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1월 5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상정·의결(2019. 11. 2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장애인복지장)

가. 제안이유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수행기관인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의 협약기간이 2019.12.31.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 위탁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위탁기간: 3년(2020. 1. 1. ~ 2022. 12. 31.)

2) 추진일정

- 2019. 11월: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2019. 11월: 위탁협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190,000천원(시 50% : 구 50%)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우숙)

가. 종합 의견

- 이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사)서울장애인 부모연대와의 협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가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